



1. 법과 아동복지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아동복지관계법
3. 아동복지법의 개요
4.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 제2장

# 아동복지법의 이해



‘아동복지법의 이해’는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므로 우선 사회복지법<sup>4)</sup>의 체계에 준하여 아동복지법이 지니는 법적 위치와 그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이자, 이 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 두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사항은 개별법으로서의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인 만큼, 아동복지법의 연혁과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 사항이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존하는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 개괄적 수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기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구체적 지식을 지녀야만 향후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지는 독립법으로서의 아동학대관련법의 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1. 법과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분야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대한 학문적 및 실천적인 제 설명들은 사회복지의 그것과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며, 법적인 관점과 조치에서도 그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법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그 근거로 마련된 사회적 수단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칼버트(Calvert, 1978 : 1)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공식적(公式的)인 제도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아동복지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아동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지배 계급의 사회통제적 음모에 의해서 단순하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권력관계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이며, 또한 하나의 시혜적 조치라

4)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개별법으로서의 ‘아동복지법’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

면 그것은 단순한 ‘사실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상광, 1988 : 314, 원용).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복지제도가 진정한 ‘법 관계’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인 아동 사이에 아동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윤찬영, 1998 : 24, 원용).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성문법주의를 따르는 나라에서 법적 근거를 지니지 못한 아동복지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논리라 할 것이다. 요약하면 법과 아동의 관련성은 법을 통한 아동복지(child welfare through the law)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Carrier & Kendal, 1992).

##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아동복지관계법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적용 대상은 매우 넓기 때문에 아동만을 위한 관련법을 정의하거나, 체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상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가 아니라, 여러 관계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큰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계법의 범주에서 아동복지관계법은 아동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한 각종 대책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 곧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보건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하위법으로서 아동복지 관련법을 제정·실천하도록 조치고 있는 것이다(〈표 2.1〉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에서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로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사회복지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은 여러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sup>5)</sup> 특히 아동학대의 관련법으로 고려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법<sup>6)</sup>은 모두 사회복지서비스법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관련성의 검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관련 예를 제시하면,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의 일부가 개정된 것들을 수 있다(장동일, 2001 : 426).

6) 정식 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 1) 아동복지관계법의 개념

아동복지관계법이 어떠한 정의를 바탕으로 어떠한 원리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 및 관계법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아동복지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관계법은 그 나라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위한 법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때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지관계법은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와 지위에 관한 법의 총체 또는 아동의 복지에 직·간접적인 관련을 지닌 법(이소희, 2002 : 231)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아동이 직접 대상이 되는 법은 개별법이 될 것이며, 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법은 공동의 관계법이 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법은 명시적인 법으로, 간접적인 대상이 되는 법은 묵시적인 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아동복지관계법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로 구분되는데, 성문법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수직적 체계를 따르고 있다(윤찬영, 1998 : 123). 다시 말하면 법규범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의 하위규범들은 상위규범 속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화는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 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응적인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같은 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는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위계는 대부분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원(法源, source of law)인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복지법 역시 이러한 법질서 속에서 헌법-기본법-개별법이라는 수직적 체계를 근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라는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의 정의와 범주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자체가 용이하지는 않다(김만두, 1985 : 109; 박석

돈, 1999 : 69; 신섭중, 1999 : 22-25; 장동일, 1996 : 25; 윤찬영, 1998 : 73).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학자의 사회복지관련법 체계를 따르거나, 또는 통합하여 따른다고 해도 특별히 아동이라는 대상별 특성을 간과하기 쉽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관계법의 체계에 대한 연구를 고려하여(김엘림, 1990 : 81-82) 주요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는 있다. 그것은 기본법 및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보장관계법(민법, 세법, 노동관계법)으로 구성하고, 대상별 체계에서는 일반아동, 요보호아동 등으로 구분한 후, 이를 중심으로 다시 공통 관련법과 개별 관계법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른다면 아동복지 관계법의 범주는 매우 넓은 편이며, 기본법적 성격으로서 아동복지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아동을 위한, 또는 아동이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포함되는 사회보장관계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관계법을 명확하게 체계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아동복지관계법의 체계는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개별법이라는 수직적 체계를 근간으로 하되, 다시금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범주로서 공적부조법과 사회보험법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법 및 기타법에 속하는 관련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과 요보호아동을 중심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직접적인 아동복지관계법은 법의 명칭이나, 목적 및 법의 적용대상에서 ‘아동’이 명시되는 법을 말하며, 간접적인 법은 법의 제정 배경 또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아동이 주요 대상임을 시사하는 법을 말한다.

### 3) 아동복지에 관한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최상위 규범인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해 규정한 법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헌법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지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주 내에서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의 기능을 한

표 2.1 헌법의 내용과 아동복지보장과의 관련

조 항	권 리	내 용
제10조	기본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1조	교육권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사회복지권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보건의 보호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 이것은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이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존권에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은 특별히 국민의 생존 및 생활권의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개별 사회복지법의 제정과 운영에 있어서 강령 내지는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우리 헌법은 이러한 기준과 지침되는 원리의 하나로서 ‘복지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김엘림, 1990 : 85),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국가주의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주의에 입각하되, 시장경제체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각 개별 사회복지법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이념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헌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는 위계 하에서 개별법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도 당연히 헌법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항을 아동복지와 관련해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제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권적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고, 그 기본이념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 3. 아동복지법의 개요

아동복지가 법적 근거 하에 실시되기 때문에 아동복지종사자는 적어도 아동복지법 전반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아동은 미성숙하여 독립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익을 위해 그 어떠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서있지 못하다. 따라서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종사자는 아동의 대변자, 옹호자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은 법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적용과 함께 아동의 권익을 위한 사항이라면 아동복지법은 물론, 관련법의 제·개정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지식·기술이 필요하다(이소희, 2000).

#### 1) 아동복지법의 입법 배경 및 변천과정

우리나라 아동복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이다. 이후 이 법은 1981년과 2000년에 각각 ‘아동복지법’이라는 법명으로 전문 개정이 있었다.

## (1) 1961년 아동복지법

- 목적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가 부적당할 경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징과 의의 : 근대적 의미에서 요보호아동이지만, 아동의 복지를 국가적 책임 하에서 보장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 (2) 1981년 아동복지법

- 목적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징과 의의 : 전체적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대책 수준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곧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입법되었다는 점이다(김만두, 1991 : 370-372).

그리고 1961년의 아동복지법과 비교할 때,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신섭중 외, 1991).

- 아동복지의 대상자가 요보호아동에서 일반아동으로 확대됨.
-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조항이 신설됨.
- 아동복지지도원을 종래 특별시와 도에만 배치하던 것이 도·시·군·구의 아동상담소에까지 확대·배치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삼음.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직원의 자격 직무를 별도로 규정함.
-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던 것을 심신 장애 또는 재학 중인 경우에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함.

## (3) 2000년 아동복지법

- 목적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징과 의의 : 아동의 권리와 안전 등 보편적 측면이 강화되고, 특히 아동학

대에 관련된 조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이태수, 1999 : 25-26).

- 시설설치에 있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
-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함.
- 퇴소기간을 연장함.
- 아동보호시설 보호기간을 조정함.
- 아동학대의 조항을 신설함.

## 2) 현행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전문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p> <p>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p> <p>③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p> <p>④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p> <p>⑤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p> <p>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p>
제3조 (기본 이념)	<p>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p> <p>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p> <p>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p>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계속>

제4조 (책임)	<p>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p>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제10조 (보호조치)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p> <p>나.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p> <p>다.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p> <p>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p> <p>마.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p>

(계속)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제14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29조 (금지행위)	<p>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②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③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④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⑤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⑥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p>

#### 4.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의 가장 큰 특징과 아동복지적 의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입법 당시부터 아동학대 단독법으로서의 제정 및 아동복지법이나 가정폭력 관련법에의 포함 등으로 격론을 벌였던 법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 1)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포함 배경

아동학대의 격증 및 이로 인한 피해 아동의 손상이 매우 위대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여러 논란 끝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입법과정에는 영훈이, 신애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러한 사건은 매스컴에서 보도되어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제고시켰다.

---

#### 사례

##### ▶ 아동학대사례(1) - 영훈이 사건

1998년 4월 27일 SBS TV에서 <추적! 사건과 사람들>의 「아동학대, 아몰지 않는 영훈의 상처」에서 “영훈이 사건”이 방송되었다. 당시 <추적! 사건과 사람들> 팀이 영훈이 사건을 방송하게 된 계기는 7살 여자 아이가 사라졌다는 이웃의 제보였다. 이웃은 ‘친모가 가출한 후 친부와 계모, 계모 소생의 두 딸과 함께 살던 이슬이(가명, 7세, 여아)와 영훈이(가명, 6세, 남아)가 사라졌다’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조사결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인해 이슬이는 1997년 12월에 사망하였고, 영훈이 역시 발견 당시 아사 직전의 상태였다.

##### ▶ 아동학대사례(2) - 신애 양 사건

1999년 8월 21일에는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신애(9세, 여) 양이 방송되었다. 당시 신애 양은 4년 전 소아암 일종인 율름 종양으로 진단 받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는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4년 동안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었다.

### ▶ 아동학대사례(3) - 뿌렌나 애육원 사건

1998년 9월 10일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뿌렌나 애육원의 ‘원생 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한겨레신문, 1998년 9월 10일). 이 사건은 뿌렌나 애육원의 원생들에게 강제 노역과 학대를 일삼은 것을 보육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저씨,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덕이 있는 원장과 이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어린이 헌장’에 나오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보낸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이 시설의 비리와 아동학대가 밝혀졌었다.

## 2) 아동복지법상에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내용

아동복지법상에서의 학대관련 조항은 <표 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2조의 학대의 정의를 비롯하여 동법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동학대 관련 조항

표 2.3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아 동 학 대	제2조 (아동학대의 정의)		
	제23조 (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14조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등)	
	제24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27조 (응급조치 의무 등)	제18조 (응급조치 의무 등)	제18조 (현장조사서)
	제28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9조 (금지행위)		
	제30조 (조사 등)		

- 아동학대의 정의(동법 제2조제4호,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4호).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외에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 긴급전화의 설치(동법 제2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24시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인 단일번호인 1391번을 설치,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동법 제24조)  
학대아동의 발견, 상담,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업무의 전담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관계법에 규정된 아동격리·보호에 관한 규정은 <표 2.4>와 같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와 절차(동법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sup>7)</sup>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7) 그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일반적인 아동보호절차를 거쳐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시행규칙 제1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달성하기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물론 일선 경찰마저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수사기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더욱 축적하기 위해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적합한 방법 등을 찾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충분한 연구와 세미나 및 조사 등을 통한 전문훈련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표 2.4 학대아동의 격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

법조항	관 련 조 문	비 고
아 동 복 지 법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조치의뢰 (제10조제2, 3호)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법원에 친권 상실선고의 청구(제12조)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가 정 등 에 관 한 특 례 법	가족과 격리하여 일시보호하거나 의료기관에 인도(제5조 응급조치 제2호)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 아동보호기관	
	● 아동학대 사례를 경찰에서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일 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격리가 가능 (제29조 임시조치) ● 가해자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보호처분(제40조) ● 6개월의 ‘학대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 등 ● 6개월간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명령	최장 1년간의 학대행위자인 친권자와 피해아동과의 격리 가능(제45조)

- 신고의무와 절차(동법 제26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을 노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지도원이 포함된다.

- 응급조치의무 등(동법 제27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

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보조인의 선임 등(동법 제28조)

학대아동사건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위축되어 제대로 사실을 전달할 수 없고,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다른 가해자는 학대사실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sup>8)</sup>

- 금지행위(동법 제29조)

동법 제2조에 규정한 아동학대의 정의를 확장한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조사(동법 제30조)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 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sup>9)</sup>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위축되어 제대로 사실을 전달할 수 없고, 학대행위를 한 부모 또는 다른 가해자가 학대사실을 축소하거나 진술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sup>10)</sup>

8)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피해진술서를 자력으로 쓰거나, 자신의 피해상황을 제대로 진술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수사과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인이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의 동석규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최소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이라도 경찰의 조사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9) 또 학대아동을 조사하는 조사관이나 상담원은 이와 관련된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만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성격에 맞게 제대로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노하우와 수사기관 및 경찰청의 수사기법에 대한 노하우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되어야 한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의 개입을 위해서는 타법과의 관련성을 숙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타법과의 관계를 요약한 것이다.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의 관계

동법은 1998년 7월 1일 가족구성원간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을 사회문제로 보고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 형사처벌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파괴된 가정의 평화·안정회복·건강한 가정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과 아동복지법의 적용관계는 가족구성원의 아동에 대한 학대 중 동법이 규정하는 유형(제2조제3호)에 대하여는 동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정 구성원(제2조제2호)
  -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제2조제3호)
  -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
- 출동경찰관의 응급조치(제5조) 및 피해자의 임시조치(제8조) 신청
 

출동경찰관은 사건현장에 적극 개입 피해자를 격리, 의료기관인도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조치 신청

10) 아동들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인 아동은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상황을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가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진술이 반복되고 증거가 인멸되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장출동,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의 과정에서 상담내용이나 피해자 및 관련자와의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비디오 촬영,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확보에 유념해 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법원의 임시조치(제29조) 및 보호처분(제40조)
  - 격리·접근금지는 2개월, 위탁·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6개월 이내의 접근제한, 친권제한,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위탁 1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수강명령

그리고 구체적 적용문제로서는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인 경우 동법에 의해 처리하나 사법경찰관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아동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원의 임시조치는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을 보호할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엔 오히려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아동복지법상의 응급조치 또는 보호조치 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 (3) 기타 법률에 대한 검토

성폭력 범죄와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소에 관한 특별규정(제18조)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및 형법과 관련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15세 미만자에 대한 근로금지(동법 제62조 제1항)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단,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형법의 경우, 아동의 폭행(제260조), 유기(제271조), 학대(제273조), 체포, 감금(제276조) 단순행위 시에는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아동학사죄(제274조)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아동학대를 매우 광의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규정의 문제와 과제

아동학대는 날로 증가해감과 동시에 그 정도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대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이소희 외, 1997).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복지를 매우 위협한다고 보고, 제2차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때, 동법에 아동학대관련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은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현상에 제대로 대처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효율적인 조기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의 미비,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부족,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전문센터와 전문인력의 부족(장화정, 2003), 학대아동을 위한 예방과 치료서비스전달체계 사이의 비연계성, 전반적인 예산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1, 2002).

사실 아동학대가 지닌 다면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제고와 함께 특히 입법관련분야 종사자의 아동학대관련 전문성이 함께 신장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규정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립보건원, 2003;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2; 이국성, 2002; 이명숙, 2003).

#### (1) 아동학대의 정의 보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명확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안동현, 2003).

#### (2) 긴급전화의 설치 확대와 홍보 강화

1391번에 대한 홍보가 확충되어야 하며, 112, 119, 1366 등과 연계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아동보호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폭 증설되어야 한다.

####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와 절차의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준사법권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서 위기상황에 적극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장동일, 1996).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법경찰관에 버금하는 일정한 조사권 등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고, 사법경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역할 등도 투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충분한 자격구비를 마련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과의 역할분담<sup>11)</sup>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할 경우, 학대아동의 치료 및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병원(응급실, 소아과, 정신과 등)으로 연결시킬 필요성도 크다. 한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박탈 및 가해자의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절차와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법조인과 연결될 필요성도 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학자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보호시설이나 그룹홈, 양부모, 사회복지시설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즉, 여러 서비스단체와의 연계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신고나 수사절차단계에서부터 필요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자문 의료인단, 변호인단 등을 구성하도록 하되, 이들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아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로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관련 기관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하여, 실무자들 간, 실무자와 기관장 간의 간담회 등 상시모임을 활성화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협조증진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가지며,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5) 신고의무와 절차의 체계화 및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주가 포괄적이지 못하다. 또한 아동학대 미신고 시의 조치 등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는 신고 의무자를 지정만 해 놓았을 뿐 이들에 대한 평소에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나 미신고시의 조치(처벌, 무고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부족하다. 신고의무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절반 정도에 미치는 신고건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미신고 시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대만 아동복지법 제18조, 제49조).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전문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신고의무자들 중 본인이 신고의무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들을 쉽게 접하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긴급전화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김연희, 2001). 따라서 차후 개정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이들 각각 계층의 실정에 맞는 꾸준한 교육과 이들이 아동학대 실태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11) 예컨대 현장에 출동한 뒤 기본적인 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그 조사결과를 제공하여 이를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장희승, 2002). 나아가 이들이 미신고 시나 혹은 무고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로 이들이 신고 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 (6) 응급조치 의무 강화

응급조치를 수행함에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과 사법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응급조치 수행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도 준사법권적 권한이 부여되어서 어떠한 학대상황에 노출된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처분 도입 이후,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후견인 선정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안동현, 2003).

#### (7) 보조인 선임제도의 개선

피해아동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반복된 진술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즉, 각국의 수사시스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자료를 축적·분석하여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조사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최정숙, 2003).

#### (8) 금지행위의 보완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부분은 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 성보호법, 다른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 제29조제2호의 ‘성희롱’, 제3호의 ‘아동의 정서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4조의 ‘방임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아동학대범죄’ 유형에 대한 더 많은 검토 및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9) 조사체계의 구조화 및 강화

현재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들은 아동복지법 제2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에서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항이 아동학대 전문상담원들이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 학대현장 조사를 할 때 가해자로부터의 신변위협, 조사거부 등으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규정 검토와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이명숙, 2003).

아동학대현장조사 시 학대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은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등의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주거사실 및 가족사항 등을 확인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보건복지부, 2003)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현장조사 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위험성과 심각도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정·판별하기 위한 기존도구로 ‘스크리닝 척도(screening scale)’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집된 학대관련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아동학대 위험사정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사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사례판정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들 조사도구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시의 적합성이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10) 친권상실 내용의 수정·보완

가정폭력방지법과 관련하여 아동의 학대와 관련된 부분은 따로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친권을 상실한 아동에 있어서는 이들을 원가정과 같이 편안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입양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조치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2조와 제13조에는 아동의 복지를 위한 친권상실 신고 청구와 그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아동학대의 사례에 있어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통해 아동을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여의치 못할 경우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취해지게 된다. 또한 친권상실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친권행사의 일시 정지 등도 필요한 때가 많다. 따라서 아동의 친권과 관련하여 가정폭력방지법상의 ‘보호처분’제

도를 현재의 친권행사제한 규정만 있는 것에서 벗어나 친권상실신고 및 영구입양, 일시보호소 입소, 그룹홈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부모 중 한 사람, 아동보호전문기관, 친인척 등의 청구에 의해 검사가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도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직접 민사법원에 법정대리인이나 시, 도지사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가 친권상실, 친권행사 제한 등을 청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 (11) 응급처리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의 제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한다(이명숙, 2003).

#### (12) 처벌조치의 타당성 확보 및 강화

아동복지법 제40조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다. 물론 벌금이나 징역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주로 친부모나 이에 준하는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해자를 교화해서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보호관찰이나, 상담명령, 수강명령, 접근 금지 등 다양한 벌칙 내용을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명숙, 2000).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구성원(부모자식, 양부모나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 동거하는 친족 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현행법상 가정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폭력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 처리된다. 즉, 가정구성원 사이의 아동학대행위 중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으로 부적절한, 즉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및 가정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만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성격 및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가정구성원들 중 한 명이라면, 그들 중 대부분은 ‘보호처분’ 정도로 종결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가해자는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현실이다(〈표 2.5〉 참조).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목적 하에서 우선적으로 ‘가정폭력방지법’상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을 더 보완하고, 그 보호처분<sup>12)</sup>이나 임시처분의 내용 등에 있어서도 이 내용을 보완

12) 아동학대 행위로 고통 받는 아동 중 적지 않은 아동들이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박탈, 친권상실 등의 처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1998.7.1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표 2.5 아동학대 관련 벌칙 조항

법조항	관 련 조 문	비 고
아 예 보 지 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9조제2호)	
	아동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제3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제29조제4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제5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제29조제5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6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제29조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정 폭 력 예 외 조 항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이내의 친인척(예 : 의붓아버지)일 때,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일 때는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18조).	고소에 관한 특별 규정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복지법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9조제8호)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제6조).		
학 법	아동을 폭행, 감금, 유기, 학대하면 폭행죄(제276조), 유기죄(제271조), 학대죄(제273제1항),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으면 아동학사죄(제274조)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지 1년 여가 지난 뒤까지 친권행사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며, 친권이 상실되거나 박탈된 자는 민법이 시행된 후 지금까지 손에 꼽을 정도로 이를 정도로 희소하다.

하는 등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한 아동학대의 예방 및 처벌위주로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제3자를 통한 아동학대의 경우 위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그 성격상 다른 범죄처럼 단순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호관찰이나 상담명령, 수강명령, 접근금지 등 다양한 벌칙내용이 검토, 도입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가해자를 교화해서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의 과거의 가혹행위에 대한 일회적인 처벌위주의 현행처벌 규정은 그 효과에 있어서 미지수이다.

이처럼 아동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일반 범죄행위와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와 같이 아동의 보호자인 가해자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처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이 좀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시행절차나 처벌내용, 아동학대 행위 유형 등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검토와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아동복지법의 개정만으로 역부족일 때는 가정폭력방지법의 개정을 통한 보안보력이나 별도의 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을 통한 해결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13)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특성과 조사시 주의점, 조사상의 노하우, 관련체계와의 연결,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문제에의 개입 등을 기대하려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실무자들의 지도와 기술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단체들의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여러 교육방법과 수사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 (14) 부모교육의 강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감정이나 분노에 의하여 아동을 구타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15)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예방세미나, 아동학대사례발표회, 워크숍, 아동학대 사진전 및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문제는 실로 다양하고도 위협적이다. 이에 따라 오늘날 상당수의 아동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을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도울 뿐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곧 아동복지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입법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법적 지체현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의 복지가 한 사회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볼 때, 그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여러 아동복지 조치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장동일, 1996).